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3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의무 신설	3
2.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

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 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의무 신설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이 접근하지 않게 하도록 소유자등에게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 -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3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맹견이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개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로,²⁾

【 맹견 등록 현황(‘24.12. 기준) 】

(단위: 마릿수)

합계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잡종
1,934	200	989	25	23	583	114

※ 주 : 맹견 소유주 총 1,177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사육허가 의무, 안전장치 착용 등 관리의 의무, 보험 가입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기구,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등,³⁾

다른 동물의 소유자등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의무와 다양한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3) 「동물보호법」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등

규제를 두고 있음.

특히,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여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⁴⁾ 최근에 어린이 놀이터에 목줄·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 출입한 사건⁵⁾ 등이 발생하여 맹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물림 사고 통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물림 건수(건)	2,114	2,197	2,216	2,235	1,980

※ 자료 : 소방청

이에 개정안은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이 접근하지 않게 하도록 소유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연합뉴스, ‘태안 아파트 단지서 7세 아이·엄마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쳐’, 2022. 5. 20.

5) SBS뉴스, “‘입마개 안 한 맹견이 놀이터를’ 지적에…“사진 찍으려 풀었다””, 2024. 6. 27.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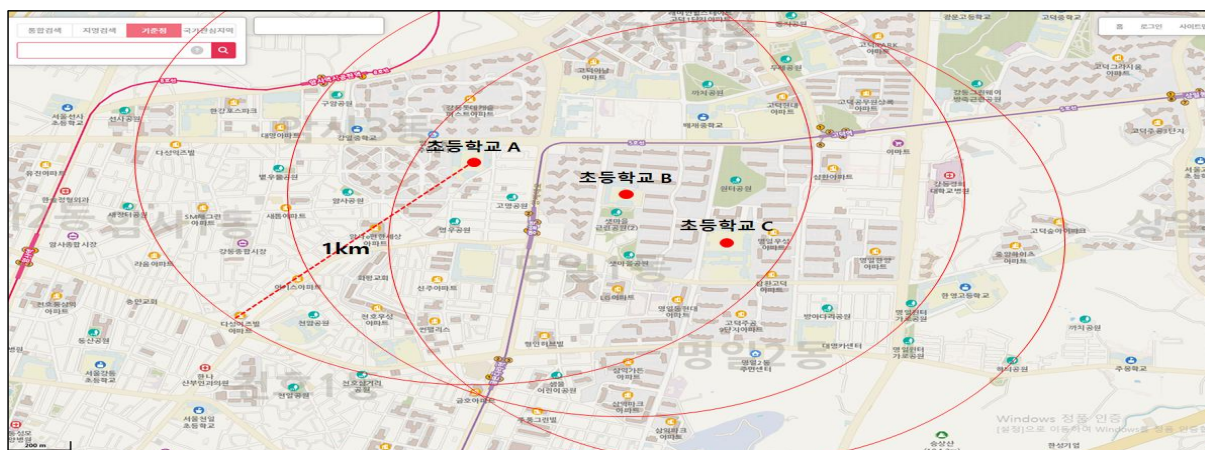
첫째,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 맹견 소유자등의 이동권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초등학교는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⁶⁾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과 함께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맹견 소유자등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반려견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시행 시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구역 예시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 예컨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둘째, 맹견 소유자등이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해당 구역 이내인지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내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소유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맹견 소유자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맹견 소유자등이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의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및 유아 관련 시설 내로 출입을 금지하는 현재 조항만으로도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맹견 소유자의 주소지가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

2.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 또는 맹견의 출입·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맹견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 소유자등이 맹견 관리 준수사항과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해당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97조·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u>지방자치단체</u>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신고 등) ① ----- ----- ----- <u>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u> ----- -----.
1.·2.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u>
<u><신설></u>	4. <u>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장소 등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맹견</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 12. (생략) ⑥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건의 소유자등</u> <u>7의3.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건을 출입하거나 접근하게 한 소유자등</u> 8.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건의 소유자등</u> 3. (생략) 4. <u>제22조를 위반하여 맹건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u> 5. ~ 18. (생략) ③ ~ ⑤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1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①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②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하며 ③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⁷⁾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기구,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하 ‘맹견 관리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와 맹견 출입금지 장

7)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8)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소에 목줄·입마개 없는 맹견이 출입하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맹견이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접근 금지 장소에 출입·접근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맹견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 관리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 외에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준수사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맹견 소유자등에게 가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⁹⁾

9)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이미 처벌 규정이 존재함.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는 ‘제21조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현행법 제21조제1항제3호는 맹견 소유자등의 관리 준수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이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39조가 속한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은 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과 ② 출입·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접근한 맹견은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로 포섭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동 개정 사항은 법 체계상 별도의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9조제1항제3호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①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하였거나 ②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맹견 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부합하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관리 준수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맹견 소유자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며,

현행법 제39조에 따른 신고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신고 규정이므로 해당 조문에 개정안에 따른 신고를 추가하는 것은 현행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